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5. 18.

증권선물위원회

- 1.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14:08~19:23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원장 <의결제77호및제237호(*20년)~제239호(*20년)>

- 이 명 순 위 원
- 이 상 복 위 원
- 이 준 서 위 원
-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10차 증권선물 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1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37호(2020년)『하나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38호(2020년)『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39호(2020년)『현대차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하나금융투자㈜의 ○○○○○ 말씀드리겠음. 본 건은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기관 간 거래방식임. 피해도, 피해자도 없음. 위법이라 지적된 바도 없음. 실제로 지적 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여타 대형증권사 종합검

사 및 부문검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없음. 지금 이 건이 처음이고 바로 중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회부되었음. 저희 들 생각과 달리 위법이라 판단하시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행정지도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소망함. 저희는 어떠한 위법 인식, 위법의 가능성 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번에 한해서 민간 금융회사에게 신뢰와 포용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함.

▶ (진술인) 대리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 참여수수료가 사적자 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적법한 거래조건 결정 영역을 벗어 난 위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가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의문이 듦. 참여수수료 등 수수료는 금융시장에서 적법성,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금융제공의 대가라고 생각함. 이 사건 수수료가 판례에 의해서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는 신 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의 참여수수료와 본질이 다 르지 않다고 생각함. 과연 이 사건 수수료는 위법하고 신 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의 참여수수료는 적법한가, 양자를 달리보아야 한다면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 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 고 있음. 또 한 가지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참여시점이 언제냐, 수익증권 총액인수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해당 투자자의 역할이나 수수료의 성격, 지급의 정당성 등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근거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함. 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시기가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기울여야 할 노력 등의 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두 번 째로는 이 사건 수수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금융투자업자와 전문투자업자인 기관투자자 사이에 증권 사모거래라는 거래의 성격을 고 려할 때 이런 수수료 약정 및 수수가 투자자보호나 건전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위원) 본 건은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이 되려면같이 인수한 경우로 공동금융주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가있고 나중에 재매각(sell down, 이하 재매각)을 해서 참여수수료 지급한 경우가 있음. 재매각을 한 것과 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 ▶ (진술인) 저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함. 금융을 필요로 하는 금융수요자가 자기가 금융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라는 재원을 내놓음. 그 수수료 재원을 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한 금융제공자들이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을 받아 가는 것인데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과 같이 금융제공자 집단이 최초부터 명확하게 설정된 경우하고 지금 저희 사안에서 재매각이 된 경우처럼 금융참여자의 집단이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융수요자가 출연한 금융제공의 대가가 그 금융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데 참여한 금융제공자 집단 사이에서 배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이 같다고 생각함.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음.
- (위원)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

인하고 수수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진술인) IFRS9 하에서는 할인매각은 당해 일시 인식하고, 수수료 지급은 대상자산의 만기까지 안분해서 인식함.
- (위원) 진술인의 입장은 큰 틀에 있어서 매매라는 것은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으로 하든지 수수료로 하든지 실질에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침해된 이익이 없다, 투자자보호 관점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연기금·공제회라고 하는 기관투자자가 1% 할인 매각이라는 이유만으로 만기 30년짜리 대상 자산을 취득 하지 않다가 1% 참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함. 지급방식 때문에 대상 자산의 선택과 투자자산의 선택의 가치가 왜곡되지 는 않는다고 생각함.
- (위원) 사전 재매각이라고 한다면 제 판단에는 인수하는 날짜에 바로 재매각이 되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5개월 후에 재매각이 되었음. 사전 재매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기

간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5개월 동안 길어졌을 경우 하나금융투자㈜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인지?

- ▶ (진술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사례는 아주 특이한 것임. 그렇게 사전 재매각이라고 했으면서도 오히려사후적으로 양수도된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투자확약서 (LOC)만 제출하고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투자북(Book)이다 차서 그것을 반기가 지난 다음에 취득하는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음. 그리고 당연히 양도인인 하나금융투자㈜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등 여러 가지 안분해서 나누고 있음.
- (위원) 하나금융투자㈜에서 재매각할 때 일단 팔고 나면 매각한 대금이 들어올 것인데 그 대금은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지?
 - ▶ (진술인) 저희 IB Book으로 들어옴.
- (위원) 수수료 지출하는 부서도 똑같이 IB Book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하나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같은 곳에서 수익 도 취하고 비용도 지출하는 것이니까 해당 부서의 수입지출 로 잡히는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매입한 기관이 보험사, 연기금 등 다양한지?
 - ▶ (진술인) 보험사와 연기금·공제회가 거의 90% 이상임.
 -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는 수익증권 인수 후 재매각하는 거래와 관 련되어 불건전영업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 공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음. 먼저, 본 건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자 본시장법 제71조와 금투업규정 그리고 금투업규정의 위임 을 받아 협회가 정한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면 저희가 재매각 과정에서 수수료 취급한 건을 과연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의 문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사적 이익(접대, 금전,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알 고 있고, 저희와 같이 수익증권의 매각 관련한 매매대금 을 할인으로 할 것이냐, 수수료 지급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양당사자 간의 거래대금 조정의 결과를 놓고 그것의 형식이 수수료 지급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사적 이익 또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수령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고 생각함. 너무나 잘 알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지 만 해외 접대골프라든가, 여행 경비를 제공해 준다거나

과다한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재를 해 왔었지, 저희 건과 같은 재매각 거래, 기관 대 기관의 거래를 제 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이 사적 이익의 제공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규율하는 것은 규 정의 합리적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형식은 수수 료 지급일지 모르겠지만 두 당사자 간에는 매매대금을 할 인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저희 이번에 적발된 건 중 에 하나가 오피스 매입 목적 펀드의 수익증권을 재매각했 는데 ◎◎화재한테 재매각할 때는 할인을 했음. 그런데 똑같은 수익증권을 ◎◎화재한테 재매각할 때는 수수료를 받았음. 그런데 할인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수수료를 지 급받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당사자 간 에 실질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합의의 형식만 다른 것이지, 이것을 달리 보기는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 함. 제가 그동안 법률을 하면서 규제당국의 규제정책이라 고 하는 것은 형식도 외면하지 않고 실질도 외면하지 않 는 형태의 규제를 해 왔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만 가지고, 수수료의 실제 용역내용이 무엇이냐는 것만 따져서 규제 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너무 얽매인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함. 과거 규제 사례들은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를 봐서 규제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규 제해 왔고, 그래서 SPC를 다수 만들어서 사모형태로 진행 한 거래에 대해서 공모라고 규제한다거나 SPC에 대해서 매입확약한 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TRS거래, 대출이라 고 봐서 규제해 왔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질을 기준으로 타당성 있는 규제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그 와 결을 달리 하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함. 이런 상황에서 는 시장의 인식과 다른 규제를 사전 계도 없이 하는 것보 다 계도를 통해서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먼저 준 후에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규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함. 과거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 와 관련되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 이 불명확할 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알린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수정하지 않는 자 또는 차후 다시 반복하는 자 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오류를 수정한 자는 제재하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번 건도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고 바람임. 저희는 과태료 면제 사유 가 존재한다고 생각함. '고의',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 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 거나 미미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정을 요구하거 나 주의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음. 본 건의 경우 말씀드 린 대로 수검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 한 재산상 이익으로 규율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 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대등한 기관투자자 간의 합의였다 는 점에서도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피해라든가, 사회 일반 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함. 그런 점 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과태 료 면제 사유에 저희는 해당한다고 생각함. 설혹,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금액은 과태료 부과시 고려하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행위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다소 높다는 생각이 듦. 저희생각으로는 동기도 약하고 결과도 경미하니 그에 걸맞게과태료를 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임.

- (위원) 대체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는, 대체자산의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 ▶ (진술인) 자산의 특성과 저희한테 재매각 받는 전문 금융기관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사실 불특정다수의, 꽤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 식의 거래를 한다면 시장가격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거래했던 것들은 수수료를 지급했든 할인을 했든 간에평가가격에 대해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평가해서 그 가치(value)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영향을 주지도 않음.
- (위원) 이것을 리테일(retail)로 다시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시는지? 예컨대, 리테일(retail)로 매각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기준가격 같은 것이 바뀔 것인데, 할인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두 경우에 있어서 기준가격이 변할 것 아닌지?
 - ▶ (진술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의 기준가격은 저희가 재매각을 하거나 향후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반영 하지는 않음. 그것은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주식이라든

지 채권에 해당하는 얘기임. 이런 프로젝트 펀드의 기준 가격은 대상자산의 가치(value) 그리고 환변동 이런 것들 만 가지고 반영을 해서 평가사에서 일일시가평가(daily mark to market)로 제공해 주고 있음.

- (위원) 일일시가평가(daily mark to market)로 제공을 하는데 할인을 한 경우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value) 자체가 바뀌는 것일텐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아닌지?
 - ▶ (진술인) 거래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음. 기초자산의 가치(value)만 가지고 펀드기준가는 나오는 것임.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자산군(asset class)은 상장주 식, 상장채권과 같이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사와서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재 매각하고 나면 다음에는 거래가 다시 되지 않음. 이것은 거래가격을 반영해서 기준가를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임.
 -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 건 참여수수료 등 지급행위에 대해 금융감독 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 조제1항제2호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 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행위

인지,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인 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사회적 상규에 반 하는 행위인지와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 는 행위인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첫째, 본 건 참여 수수료 등의 지급은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음.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매수인은 처음부터 딜소싱(Deal Sourcing)에 기여한 경우도 있고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금 융상품의 만기가 장기인 경우 당연히 할인된 가격이나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 시장상황임. 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보유한도 를 줄임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익 스포저(exposure)를 줄이라는 것은 일관된 금융감독당국 의 방침이기도 함. 따라서 수익증권을 매도하면서 수익증 권의 가격을 할인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 급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 해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인의 경우 임대가격을 할인해줄 수도 있지만 무상임대 (rent-free) 기간을 두고 임대가격은 건드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과일도매상이 과일을 팔 때 과일값을 내려 싸 게 팔 수도 있지만 과일값은 그대로 두고 과일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무상임대(rent-free)나 과일을 더 많 이 주는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것과 같 음. 둘째,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 적이 없음. 매도인은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의 업무처리에 매도 인이 개입한 것은 전혀 없을 뿐더러 매도인에게는 수익증 권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 급하는 방식을 취할지 선택권이 없음. 나아가 매수인이

수취한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음. 결국 매수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 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도인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매 도인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고 할 것임. 오히려 매수인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별도의 수수 료를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책임 영역이지, 매도인의 책임영역은 아닐 것임. 셋째, 제공한 이익이 없음. 매도인은 이미 할인된 매도가격을 예정하고 있었고 할인된 가격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 로 별도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 역시 할인 된 가격의 수익증권을 양수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취하 더라도 별도의 이익을 수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본 건에서 매수인이 수취한 구체적 직·간접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봄. 넷 째, 만약 본 건 참여수수료 등 지급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면 제공된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보임. 금융감독원에서는 과거 1박2일 골프 나 해외여행의 제공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이를 회수할 것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하였고 그 에 따라 증권회사에서는 이미 회수하였던 사례가 있음. 본 건 역시 실질적 용역제공 없이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 위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한다면 실질적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음. 만약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도인의 주주로부터 배임 추궁

의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임. 다섯째, 형평성 문제임. 먼 저, 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재산상 이익 수령은 별도의 수 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던 매수인 역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이라 할 것인데 매수인에 대한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 의 지급행위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또 본 건과 동일한 형태의 수수료 지급은 이미 하나금융투자㈜ 나 메리츠증권㈜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증권사에는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일들임. 더군다나 본 건 검사 이후 증권업 계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대상 회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 임. 마지막으로 설령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이라고 판단 하시더라도 10억 원의 수익증권을 매도한 후 3,000만 원 의 참여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함. 본 건 참여수수료 등의 지급행위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임. 또, 2017 년 4월에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이익제공 한도 규제 가 철폐되고 5년간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이익제 공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금융 투자협회 규정이 바뀌었음. 이러한 점도 참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 (위원)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제1항제2호 이 부분이 좀 전에 하나금융투

자㈜나 메리츠증권㈜에서 진술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 수행은 저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이 금융투자업 규정에 위임을 했음.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금융투자업 규정이 위임을 했으니까 협회 쪽에서 자율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협회규정은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거나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 협회의 기준과 협회의 해석들을 인용해 왔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중에 가장 모호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지금까지 없었음. 그래서 과거 채권보관(parking)과 관련해서 해당 직원들이 타영업 직원들에게 1박2일 골프를 접대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행위들을 금융투자 협회에서 만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음.
-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대체자산 같은 경우에는 할인으로 하든 수수료로 하 든 기준가격에는 변동이 없는지?

- (보고자) 펀드설정 후에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기준 가격에 영향은 없음.
- (위원) 진술인 쪽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는 "기관 대 개인"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전제가 "기관 대 개인"이라고 주장을 하 고 있음. "기관 대 개인"의 경우 어느 정도가 불건전영업행 위 제재의 적절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 (위원)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싶은 것이 "기관"으로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제재를 확대·적용해 나가는 것이 과연 이 조항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음. 그다음에 만약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전에 지침(guideline)이나기준을 업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함.
- ㅇ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36분 정회)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16시55분 속개)

- □ 의결안건 제115호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 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벤처기업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B이라고 함. 저는 현재 생명공학바이오 벤처기업을 2016 년에 ▲▲대학교에서 창업을 해서 현재 기술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중심 기업의 대표 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 와 중에 저희가 ㈜ >> > > 라는 기업의 AAA 대주주로부터 주식 170만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보고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 게 된 것 같음. 교수한지 한 26~27년 되었지만 신참 사업 가로서 제가 무지했던 것은 반성하고 있음. 왜냐하면 여 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조건부 가계약으로 생각을 했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계약내용이 2,200원이 되는 상승장이 지속 될 경우 저희 회사에서 그것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두 번째 는 AAA 측에서 먼저 이것은 나중에 제대로 계약할 때 하자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 불찰이면 불찰이고 또 신참 사업가로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은 2019년 3월에 저희가 계 약할 때 2,200원을 넘어가지 못했음. 지속적으로 넘어간 적도 없고, 2019년 12월에 한 2~3일 동안 그 금액이 2,200

원 정도 되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와중에 AAA 회장 측에서다른 쪽과 계약을 맺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공시를했음. 그래서 저희는 황당해서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내놓아라"해서 주식도 하나 못 갖고 아직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회사는 저희가 못 들어가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서 현재 주식거래가 다 정지되었고 상장폐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잘 몰랐던 것은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약이 예약매매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못했음. 결과로 저는 주식을하나도 취득하지 못했고 회사 인수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AAA 측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해 왔고, 지금 가계약금 5억 원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음.

- (위원) 아까 조건부 가계약, 가계약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음.계약서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 (진술인) 실무적으로 계약서로 되어 있음.
- (위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사실(fact)이고, 동기를 보면 BB씨하고 동생인 CC씨가 1차, 2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AA씨에게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AAA씨의 답변서에 있다고 함. 본건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몰라서 못했다고 했는데 AAA씨의 답변서에 의하면 알고 있는데 안 하신 것으로 나

오고 있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저는 AAA 측에서 먼저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자리에는 제가 가지 않고 실무진인 동생을 보냈는데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 는 답변서에도 억울해서 썼는데 저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만은 확실함.
- (위원) 그렇다면 AAA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인지?
 - ▶ (진술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00원 되어 나중에 상 승세가 유지되면 그때 제대로 살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진 짜 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몰랐으며, 또 AAA 그 분이 지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렇게 얘기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임.
- (위원) 본인은 이것을 가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AAA 씨는 계약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이후에 수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다른 것인데, BB씨는 가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AA씨는 본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 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AAA 회장님 측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것은 나중에 공시하자고 한 것이고, 제가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음. 그리고 제가 실무진을 두어 번 보냈을 때도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

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음.

- (위원) AAA씨가 계약해지 통보를 2020년 1월28일에 내용증명을 해서 BB씨에게 보냈다는데 그것은 받으셨는지?
 - ▶ (진술인) 받았음.
- (위원) 그것을 받고 나서 BB씨의 이후 행동(Action)은 무엇이었는지?
 - ▶ (진술인) 황당했음. 그러면 좋다, 안 할 테니까 계약금이라도 내 놓으시오, 5억 원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못 받고 있음. 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냈음.
- (위원) 지금 얘기가 바뀌는 것이 BB씨는 이것을 가계약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 ▶ (진술인) 왜냐하면 본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 상적인데, AAA 회장 측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 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 저희한 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 그리고 사실은 AAA 회장도 저 이상으로 커다란 피해자여서 제가 그 분을 폄훼하고 싶지 는 않음.
- (위원) 그러면 BB씨가 계약한 것을 가계약이라고 판단한 근

거는 무엇인지? 아까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에 가계약이라고 안 적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 혼자 이것을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가 있는지?

- ▶ (진술인)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계약이 되면 사실 그때가 1천 얼마였는데 "2,200원이 되면 우리가 3,000원에 사 주 겠다"고 했음. 3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4월~10월까지도 옆으로 기다가 M&A가 들어가면서 한 이틀인가, 3일 2,200원으로 올라갔음. 그래서 움직일까 하고 그때 계약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는 바람에, 1,500원, 지금 1,000원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3,000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음? 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주 가가 2,200원 이상이 되면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돈을 다지불하고 주식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 (위원) 알겠음. 그러면 계약서상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변하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 ▶ (진술인)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얼마 이상 상승세가 지속 되면 그때 체결하자는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음.
- (위원) 그러한 문구가 계약서상에 있는지?
 - ▶ (진술인)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한 문 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2017년과 2019년에 매입 대상자가 회사에서 개인으로 바뀌는데, ㈜◈◈에서 왜 BB으로 바뀌는지?
 - ▶ (진술인) 2017년에는 ㈜◈◈이었고 2019년에는 BB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지?
- (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는지?
 - ▶ (진술인) 모름.
 -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은 이것이 가계약이니, 조건부 계약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금감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2017년 계약은 주식양수도계약서로 명시가 되어 있고, 2019년 수정된 계약도 주식양수도계약으로 명백히 나와 있음. 그리고 이것이 예약매매라든지,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발생함. 본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약금이 제대로 지불이 되지 않자 수차례 AAA씨가 ㈜◈◈ 측에 이행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해서 여러 차례 이행 확약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도 이행하지 않고 2018년에 들어가서야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하였음. 그런데도 주식이 제대로 양도가 되지 않자 AAA씨가 주식 수량을 조금 더 늘리고, 주식이 약간 희석화가 되

었으니까 단가를 낮추면서 수량을 늘리는 계약을 BB씨하고 직접 체결을 하였음.

- (위원) 그렇다면 2017년 7월에는 계약금도 지불이 안 됐고 계약서상 서명(sign)만 되어 있는 계약이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계약금 수수 없이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계약금은 당사자 간 계약의 성실성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계약이무효라는 것은 아님.
- (위원) 거기에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것 인지?
- (보고자) 조금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환사 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이익이 발생될 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만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함. 이와 같이 규율하고 있는데, 본건 계약은 더 나아가 주식 양도를 하라는 계약조항이 있는 것임. 그리고 AAA씨가 2020년에 제3자와 다른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BB씨는 법원에해당 계약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받아들여져 AAA씨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해당 주식을 처

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가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위원) 알겠음. 여기 보면 '관련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될 수 있어,'라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주의 환기 상태일 경우에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상장폐 지의 사유가 되는지?
- (보고자)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에 보면 코스닥 법인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최대주주 변경공시가 있으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됨.
- (위원) 그러면 ㈜▷▷▷▷는 계속 주의환기 종목이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주의환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내부회계 관리기준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회계가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인이 동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것임.
- (위원) 그럴 경우에는 대주주 주식양수도가 체결되면 상장폐 지의 사유가 되는지?

- (보고자) 그러함. 그리고 이 회사는 작년, 재작년 계속 감사 의견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대상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임.
- (위원) 자조심 때부터 진술인이 계속해서 동기에 고의가 없다는 것을 호소(appeal)해서 금감원에 "동기가 '고의'라는 것을 보완을 해라"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고의가 있는 쪽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기울어진 것 같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16호 『㈜ ○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는 회계처리위반으로 관계자분들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위원님들 께 업무를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함. 2017년부터 2018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 그

러나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처분 결정은 겸허히 수용할 것 임. 하지만 당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증권발행의 허용 및 과태료를 경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림. ㈜ ○○는 현재 극심한 자금 경색으로 인해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이 상당 기간 미지급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사 대금 및 금융 채무 상환 불능으로 인해서 압류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前경영진의 횡령 및 회계 분식으로 인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등이 부 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500억 원이 넘고 자본 은 -400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이런 재무 상태로 인해서 장비 제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 동이 불가능한 상황임. 게다가 현재 당사의 수주잔고는 거 의 남아있지 않음. 이처럼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 가 수주가 불가능해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한편, 당사의 주주는 대부분 소액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주총회 안건 승인을 위한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신규이사의 선임, 정 관변경, 감자 처리 등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주주총회를 위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안건들이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당사는 기존 채무를 출자 전환 및 소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 외에 현재 상황을 타 개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 전환사채 채권자 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출자전환을 통해 의결권 을 확보해서 그동안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던 신규 이사의 선임, 감자 등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들을 진 행할 계획임. 그런데 증권발행이 금지된다면 이러한 당사 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당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게 됨. 따라서 증권발행은 허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만약 여기에 과중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당사는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움. 부디, 저희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위원) 지금 회사 상황이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 ▶ (진술인) 저희 ㈜○○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인라인(In-line) 사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회사 상황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계속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평가는 항상 1등을 하는데 재무구조 문제 때문에 마지막 입찰에서 항상 떨어지고 있음.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영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증권발행을 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 니까 이 조치를 없애 달라는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더불어 저희가 전환사채채무가 400억 원 이 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출자전환해서 의결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지금은 주주총회에 저희가 안

건으로 올려도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이사선임이라든가, 정관변경, 감자처리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음. 그래서 증권발행이 안 되면 의결권 확보도 못하고, 회사가 이런 상태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위원) 과태료 부분은 4,800만 원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맞음.
 -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 두 번재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상세한 의견진술에 앞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첫 번째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건은 연대보증에 대한 이면계약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금감원에 ㈜○○에 대한 감리과정이 아닌 연대보증 제공을 공모한 ○○○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확보하게 된 사안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림. 두번째는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얻기 위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확보한 감사증거를 통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 판

단은 당연히 요구되나 이는 감사전문가로서 요구되는 통상 의 수준일 뿐이지, 부정 자체를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거나 공모 등을 통해 위·변조된 감사증거의 진위 여부까지 판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증거기 준이 감사기준을 따르더라도 감사인에게 부정이나 문서, 진위 판별 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 임. 다만, 부정의 존재나 감사증거가 위·변조된 정황을 발 견한 경우 제3자 조회나 타전문가 활용 등의 추가적인 감 사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발견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임.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조치 가 외부감사인에게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 어 외부감사 실무상 기대하기 어려운 감사절차나 판단 등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 곡히 부탁드림. 당시 사건의 개요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본 감사인은 2019년 2 월에서 3월중 ㈜ ○ ○ 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기말감사 를 수행하였고 ㈜이이의 정기주총 2일 전인 2019년 3월25 일에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음. 감사인은 2019년 11월초 ㈜ O O 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다수 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ㅇㅇ가 ㈜ㅇㅇㅇ 등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횡령 등으 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 이후인 2020년 중 ㈜○○에 대한 금감원 회계감리가 진행되었으며 감리결과 본 감사인에게는 대여금,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 홀을 사유로 '과실 I단계'가 조치통보 되었음. 참고로 금 감원은 ㈜○○와 ○○○○○○ 감사보고서에 대해 동시에 감리를 진행하였고 ○○○○○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본

감사인이 제공 받은 공증 받은 연대보증서의 효력을 무력 화시키는 이면계약서를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았고 이 를 ㈜ㅇㅇ에 대한 감리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결국 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이후에 밝혀진 사 실을 감리결과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림. 감사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부정에 기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여부와는 별개라고 기술되어 있음. 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인 에게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으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수행하고 감사 결 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감사과정에서 수집 한 감사증거가 위·변조 되었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 를 실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감사증거를 받아들 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즉, 감사인이 확보한 감사증거 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추가절차 등을 취할지, 감사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전문가적 판단 을 해야 하고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증거 가 없다면 확보한 감사증거를 인정해야 함. 감사증거와 관 련하여 감사증거는 절대적 확신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아 니라 합리적 확신을 위한 선택적 증거라는 감사의 고유한 계가 존재함. 즉, 감사의견 자체가 재무제표의 무결성에 대 한 완벽한 보증이 아닌 합리적 확신에 기초하므로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항상 존재함. 이러한 감사의 고유한 계는 감사인의 증거수집 권한의 한계 및 본건과 같이 경영 진에 의한 공모, 조작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조작된 증거

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위의 감사증거를 설득적이 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감사기준에서는 부정 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음. 감사기준서 240에 따르면 감 사인은 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다 거나 감사증거가 위·변조된 것 등을 발견한 경우 이와 관 련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를 좀 더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본 감사기준의 내용을 본 사 건과 연계해 본다면 결국 당시 외부감사 핵심내용은 대여 금과 관련한 부정의 입증이 아닌 횡령의 가능성을 고려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즉, 대손충당금 표시의 적정성임. 결 국 당시 본 감사인은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부정으로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감사역량을 집 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참고로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 인에게 수집한 감사증거의 진위 판별을 기대해서는 안 되 며, 입수한 감사증거가 위·변조되었다는 상황 등을 식별하 였을 경우에만 제3자 직접조회, 문서진위 식별전문가 이용 등 추가절차 수행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기준에 비추어볼 때 감사인의 판단에 부족함 이 있었는지를 감사 경과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2018년 5월 ㈜ㅇㅇ는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에게 440억 원 을 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및 이사회 의결 등의 내부통제 절차는 준수하였음. 감사기준 에서는 부정위험이 높은 계정일수록 통제위험 평가보다는 입증감사 위주로, 내부감사증거보다는 외부감사증거 수집 을 통해 증거력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 사 당시 본 감사인은 ㈜〇〇〇이 2018년 4월1일 설립된 신

생법인이라는 점과 거액을 이례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 가하고 기말입증감사, 외부감사증거 수집 및 손상채권을 가주한 대손충당금 평가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의 회수가능 성에 대해 높은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 였음. 2019년 2월 중순 본 감사인은 기말감사를 수행하였 고 ㈜ㅇㅇ는 ㈜ㅇㅇㅇ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입증 하기 위한 증거로 성주 및 익산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 당권 내역을 제시하였고 ㈜〇〇〇의 대여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음. 당시 본 감사인은 객관적 회수증거인 근저당 권 내역을 신뢰가능한 감사증거로 인정하였고 ㈜〇〇〇의 대여금 상환계획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합한 감사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 과정에서 본 감사인은 동 대여금이 손상되었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 여 감사증거로 인정한 근저당권 내의 금액만 회수가능하다 고 추정하였고 객관적인 회수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이이에 전 달하였음. 이후 2019년 3월11일 ㈜ ○ ○ 는 200억 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된 수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〇〇〇〇〇가 ㈜이이, ㈜이이이이이이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계 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입 증에는 그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본 감사인은 대손충당금 부족분을 입증할 추가담보나 연대보증 등의 감 사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연대보증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ㅇㅇ에 전달하였음. ㈜ ○○는 정기주총 3월29일 일주일 전인 3월22일까지 감사보 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본 감사인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바, 충분하고 적격한 감사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감사보고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이이에 지속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이이는 감사보고서 발행 마감일 하루 전인 2019년 3월21일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을 공시하였음.

- (위원) 지금 감사인들은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왜 '과실'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일단, 대여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4개의 회수가능액 과 관련된 보증담보를 제시했음. ㈜〇〇〇〇〇〇 보증내 역하고 익산 부동산, 성주 부동산, 수원 부동산 이 4건을 제 시했는데 저희가 성주 부동산에 대한 감사와 수원 부동산에 대한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충분히 수행했다고 판단해서 지 적하지 않았음. 그런데 보증내역하고 익산 부동산에 대한 평 가내역은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이고 대여금이 총자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감사위험이 매우 높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확인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회확인이라든지, ㈜〇〇〇〇〇〇 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신력 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 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과실'로 지적하는 것임. 익 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가정하여 감정평가이익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는지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했어야 되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임.
- (위원) 지금 금감원에서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음.

익산 부동산은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現 ○○○○○○○)에 대해 공증까지는 받았지만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술인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람.

- (진술인) 저희가 문답시에 여쭈어 봤는데 공증 받은 연대보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절차를 취했어야되었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에 대한 외부조회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음. 하지만 공증이라는 것은 저희가일반적으로 취하는 외부조회보다도 훨씬 강력한 법적 담보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었고 당시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문서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공증 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했음. 외부조회의 경우 당연히 공증까지 제공한, 외부조회를 보냈을 때 ○○○○에서 당연히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지, 공증까지 제공한 마당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 이유는 없기때문임.
- ▶ (진술인) 익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희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를 믿었는데 금감원 측에서는 익산 토지에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과실'을 지적하였음. 하지만 저희가 ○○○○○○ 지급보증이 유효할 경우에는 담보가 추가되는 상황이었으므로익산 부동산이 있건 없건 간에 담보는 충분히 초과되는 상황이었음.

- (보고자) 일단은 ㈜〇〇〇〇〇〇〇〇 당시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내역을 보든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의해서 지급보증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보증을 섰으면 공시를 했어야 되는 상황임.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임.
- (위원) ○○○○○○ 보증한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금감원에서는 그 정도면 당연히 ○○○○○ 가 그것에 대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감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시를 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 (보고자) 저희가 감사인이 통상적인 것들은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지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 아니면 공시내용 조회 정도는 감사인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행했어야 되는 감사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음.
- ▶ (진술인) 지급보증 사항 공시와 관련해서 ㈜○○가 ○○○
 ○○○로부터 지급보증을 체결 받은 것이 3월21일자임. 이당시 3월21일 즈음에 상장사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는데, 2019년 3월21일이면 2018년 감사보고서일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감사보고서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 공시를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 전체 금액에서 212억 원이라는 것은 자산의 거의 전부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보증했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해서 이것이 지급보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인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지급보증한 것으로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저희가기대하는 감사절차라고 판단했음.
- ▶ (진술인) 저희도 단순히 지급보증서만 제출 받았다면 그러한 절차를 취했을 것임.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절차보다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증을 받은 지급보증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임.
- (진술인)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요청하는 감사절차는 일반적이지 않음. 저희가 강력한 감사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은 지급보증서를 요청한 것이 주의를 더 기울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한 것이고 아까 조회를 안 보냈기 때문에 절차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증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회사에서 확인하는 ○○○○○의 ㈜○○와 중인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수행됨.
- (위원) 공증을 하기 위해 이행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제공된 것은 맞는지?
 - (진술인) 저희는 당연히 법적인 공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 이 정도 거액의 연대보증의 공증을 제공하면서 ○○○○○○ 절차적인 휴결을 가진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대표 자와 공모로 된 부분인데 아무튼 사후 결과에 의해서 제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임.
- (보고자) 일단 공증을 받은 것은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인정이 됨.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공증으로써 100% 덮게 (cover)되는 사항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감사보고서에 임박해서 보증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거래가 ㈜○○○○ ○○○의 자산 전체 금액과 같은 212억 원이고 그렇다면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회사에 연락을 하든 ㈜○○○○○○ 의부감사인에게 연락을 하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수행하지 않은, 그로 인해서 감사실패를 유발한 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실'로 지적을 한것임.
- ▶ (진술인) 그러니까 진위 확인을 한다면 당연히 그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이 됨.
- (보고자) 그것을 다해서 했으면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 (보고자) 저희는 이면약정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님. 감사절차 중간에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전부가 부정위험이라든지, 감사위험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행하였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취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실'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은 맞음. 회계법인 입장에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은 맞는데지금 회사를 보면 대여금이 2017년에 219억 원이었다가 2018년에 580억 원이 되었음. 그래서 자산의 50%를 넘어갔는데, 이러면 통상적인 감사절차에 더해서 추가적인(extra) 감사절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임. 그런데 그 추가적인 (extra) 감사절차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것이 지금 금감원의판단이신 것이고, 3월22일에 급하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보다 더 신중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하셨어야 된다는 의견임. 3월21일까지 감사의견 안 주고 "너네 제대로 안 하면 감사의견 안 줘" 그랬더니 급하게 제출을 했음. 그러면 거기에대해서 통상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플러스알파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절차를 저희가 수행했고 추가적인 절차를 더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 추가적인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공증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지금 이 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제

재를 하면 사후의 결과를 가지고 금감원이 제재한다, 감독 당국이 제재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 감사인들도 지금 금감원에서 제재하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고 감사인도 충분히 주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증선위에서 할 것임. 양쪽 에서 의견개진이 충분히 된 것 같음.

-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결론을 내리면 감사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음. 그래서 저는 감리위 조치(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함. 이것이 면책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음.
- (위원) 여기 보니까 공증 받은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면책을 하자고 감리위에서 얘기하셨음. 그래서 공증 받은 부분에서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위원) 당시의 상황이 설마 조작된 자료를 주겠느냐 하고 상 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증까지 요구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 통상의 절차 플러스알파까지는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위원) 금감원에 조금 더 여쭈어 보겠음. 과연 지정감사인이 고 대출이 2배가 되고 ㈜○○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 인한테 항상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지,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견거절 나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급하게 자료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든 실사를 나가든 그것을 빌려 줬다는 업체와 직접 대면해서 빌려준 것이 맞는지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항상 그 플러스알파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 하는 것은 개별적인(case by case) 것이 아닌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지금 금감원이 '과실'로 주장하시는 지급보증 제공 경위 확인, 지급보증 제공 여부 조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위 확인과 제공 여부 조회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플러스알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사인이 공증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등등, 그런 것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감리위(안)에 동의함.
- (위원) 저도 감리위(안)에 동의함.
- (위원장) 제11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우선, 2018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으로서 회사의 거액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감사절차로는 면책되기 어려운 것이 맞음. 다만, 지급보증에 대한 공증요구 등 노력을 기울였고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정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때, 현재의 제재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외부감사 규정 양정기준상 감경사유인 "정상참작"을 적용하여 ○○회계법인과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원안에서 각각 1단계씩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 의결안건 제1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 관련 개선' 부분에 실제로 이것이 20% 이하로 청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되어 있는데, 빈번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 (보고자) 공모주 방안 발표할 때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의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물량은 약 20%중에 11%정도였으며, 코스닥은 5%수준이었음.

- (위원) 'IPO 공모주 중복청약 방지 제도 도입' 이것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좋은 제도인 것 같음. 그런데 개인투자자, 개인청약자들한테 이제부터는 한 군데 밖에 못한다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보고자) 옳으신 말씀임. 저희가 별도로 증권사를 통해서 안 내할 것이고, 최근에 청약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개인들도 알고 있음. 이번이 중복청약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음.
- (위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이것은 기억이 남. 이 법률이 국회에서 바뀐 것인지?
- (보고자) 한도규정이 처음에 개정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한도를 넣자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들어간 것임.
- (위원) 일반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종투사는 안 되고, 그래서 모순적인 조항인데, 일반금융투자업자는 신용공여 한도가 어떻게되는지? 종투사와 같이 40%, 10%인지?
- (보고자) 일반업자는 한도가 없음.
- (위원) 종투업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균형(balance)이 완전히 맞춰지지는 않았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18호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임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원) 벤처넷 업무가 있는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펀드넷이라고 있음. 그 펀드넷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벤처넷의 경우에도 투자조합과 신탁업자를 다 연결시켜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는데 펀드넷 같은 경우에는 펀드와 신탁업자를 어느 정도 묶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펀드넷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축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나 운영현황은 따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음. 그와마찬가지로 벤처넷 업무도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이해하시면 되겠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19호 『○○○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20호 『㈜○○○○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분보고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을 고발하는 것이 양벌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음.
 - (보고자) 맞음. 대법원 판례도 인정을 함.
 - (위원) 지분보고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해서 개 인을 고발하는 것이 증선위에서 처음 있는 일인지?
 - (보고자) 처음은 아니고, 고발한 전례가 있었음.
 - (위원)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 론의 여지가 없음.

- (위원)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그러함. 다만, 이 사안의 문제가 되었던 ㈜△△와 ◎ ◎◎, ▦▦▦가 남부지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0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21호 『씨앤티85㈜[舊 ㈜포스링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前재무담당임원의 의견서를 보면 여기 적시한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거기에 의하면 자기 는 ○○○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 특수관계자인 것을 몰랐고, "사 가지고 ㈜○○○○ 쪽에 다시 되팔면, 굉 장히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결국 이쪽 주장은 나머지 돈을 달라고 서로 고소·고발하다가 1억 원으로 조정되어 끝났다는 식으로 얘 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진실성이 있는지?
 - (보고자) 당시 재무담당임원은 ㈜○○○과의 거래를 제안

한 사람임. 그런데 〇〇〇가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정상적인 거래처럼 얘기하는 것이 본 건에 대해서 ㈜〇〇〇〇 측에서 취·등록세를 더 내다 보니까 돈을 달라고 얘기해서 수원지 검에서 이것을 수사했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고, 그다음에 동일 건으로 남부지검에서 前경영진들의 횡령혐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건은 회계처리위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넘어갔음.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검찰에서 회계분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 금감원은 왜 지적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임.

- (보고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저희가 추가로 감리하는 과정에서 ㈜〇〇〇의의 거래가 허위거래임이 확인이 되어 지적하게 된 것임.
- (위원) 그러면 ㈜○○○○ 쪽의 관계자는 제재대상이 아닌지?
- (보고자) 소규모로 외감법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의 조치대상은 아님. 그리고 수원지검 이후에 남부지검에서수사해 본 결과 분식회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 하지만 횡령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건은 정식적으로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지만 저희가 담당검사와 통화를 해본 결과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분식회계 가능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위원) 저희들이 동일 건에 대해서 제재한 건을 또 제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검찰통보 조치는 생략한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 새롭게 인수해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동일 건에 대해 검찰통보를 일부 제외하기도 했는데 건건 별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듦.

- (위원) 저는 감리위(안)에 동의함. 그래서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에 대해서는 업무정보 송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위원) 저도 감리위(안)에 동의함.
- (위원장) 제121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이 건은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 중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은 고 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비록 검찰이 여타 지적사항을 근거로 회사 관계자를 기소하였더라도 관련 정보를 검찰에 송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제121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금융감독원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업무정보를 송부하는 것으로 하겠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22호『㈜○○○○○(舊 ㈜○○○○)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워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여기는 통상의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모두 수행해서 지적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아까 그 회사와는 달리 통상의 감사절차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지배회사의 감사 인과 동일하였음. 그리고 감사인이 취한 절차가 저희들이 봤 을 때는 급여대장 확인,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것이 맞는지 직원에 대한 인터뷰 수행까지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 였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음.
- 0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23호 『키움증권㈜의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대주주 변경 숭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9시23분 폐회)